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년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협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협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협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경쟁, 그리고 생존을 위한 협상력

Fairness, competition,
and negotiation for survival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처절하게도, 건축사들이 내건 구호는 '생존'이다.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의 구호였다.

처음 들었을 때, 굳이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할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온전히 공감하며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단어였다. 경제적 부분에서 본다면 나는 생존보다 건축이라는 일 자체에 더욱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진 않았지만, 생각을 거듭하면서 '생존'은 건축을 하는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맞다, 현재 우리 '건축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벼랑 끝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로부터 자격이 공인된 '건축사'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오죽하면 일부 회원들의 명함에 "건축사는 국가로부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 건축사는 그냥 건축사인데 말이다. 의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의료인이라고 하거나,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법률가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유독 '건축사'를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와 관습,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점등이 이유였을 수도 있고, 불법과 부정 등 좋지 않은 이면의 폐해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한 번 이미지화되고 고착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런 노력의 첫 번째는 공정함이다. '공정'은 건축계뿐만 아니라 2021년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적 화두다. 공정이란, 사전적 의미로 공평하고 이치에 맞는 올바름이다. 그렇다면 공평은 무엇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말이다. 이치에 맞는 올바른

행위는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당위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건축은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다. 공정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이라는 단어와 맞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경쟁이

여야 하는 것이다. 경쟁의 결과는, 공



정한 결과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선택되는 과정이 공정한 기준 아래서 '전문적 권위'로 판단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건축에서 공정은 결과가 아니라 바탕인 셈이다. 공정한 바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건축계의 첫 번째 과제이고, 건축계의 중심에 있는 건축사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그리고 그 결실의 축복을 받을 핵심 집단이다. 문제는 건축사들이 매번, 수십 년째 이런 공정한 바탕에 대한 희의를 느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경쟁의 치열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나 묵인하고 침묵하는 '경쟁'의 뒷면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바탕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이 수십 년째 누적되면서 건축사는 오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오해의 바탕에는 억울한 부분도 많다. 실제 조달청이 주관하는 설계공모의 경우 비건축사가 심사위원의 100%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공정한 대상으로 지목된 건축사들에 대한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현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건축사들의 앞에 놓인 게임을 공정한 바탕에서 잘 해내는 것이다. 바로 '설계공모'로 치러지는 각종 건축 경쟁 말이다.

최근 한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성관 원로 건축사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참여작을 보며 완성까지의 고생과 노력을 높이 사고, 심사 과정에서 작품들 하나하나의 분석과 토론을 주도했다. 나를 비롯한 다른 심사위원들이 지칠 정도의 질문과 집요한 토론으로 이성관 건축사를 비롯한 모든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조금씩 수정되었고, 당선작이 확정되었다. 참여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박수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좋은 작품이 당당하게 당선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공정한 바탕에서 제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이 더 적극적인 발언,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당당함은 생존을 고민하는 건축사의 최고 협상력이다. 그래야 더 이상 처절하게 생존권을 언급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축사의 품위와 도덕적인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건축사는 그냥 건축사여야 한다.